

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이 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Insurance, 약자로 KAI 로 표시한다.

제 2 조(사무소)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 연구원은 한국 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국내 선도적 수준의 보험전문인들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보험이론, 보험정책, 보험경영 등 보험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 보험분야 두뇌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 4 조(사업)

연구원은 제 3 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보험에 관한 정보교환
2. 보험이론, 보험경영, 보험정책에 관한 조사연구
3. 보험소비자에 대한 여론조사
4. 보험경영 및 보험정책에 관한 연구자문 및 연구용역
5. 보험에 관한 교육 및 연구발표
6. 보험에 관한 국제교류
7. 회원상호간 친목도모
8. 기타 연구원의 설립취지와 유관한 사업

제 5 조(운영원칙) 연구원의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, 종교,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.

제 2 장 회 원

제 6 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

① 연구원의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

1. 정회원 : 국내 최고수준의 보험전문가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
 2. 준회원 : 보험전공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
 3. 명예회원 : 보험의 발전과 공헌이 현저한 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추대하는 자.
 4. 특별회원 : 이사회 추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
 5. 단체회원 : 이사회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, 도서관, 공공연구소 및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
- ② 제 1 항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.

제 7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연구원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원의 정회원은 의결권·선거권·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원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연구원이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갖는다.
3. 연구원의 회원은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제 8 조(회원의 탈퇴) 연구원의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(회원의 자격상실)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명한다.

1.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2.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3.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

제 3 장 임 원

제 1 절 임 원

제 10 조(임원의 구성과 수)

- ①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원장 1 인
2. 이사 5 인이상 7 인이내
3. 감사 2 인
4. 연구소장 및 연구센터장

② 원장 및 이사는 민법상의 이사가 되고 감사는 민법상 감사가 된다.

제 11 조(임원의 자격)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각 직책별로 각 본회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제 12 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
- ① 원장 · 이사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.
- ② 기타 임원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3 조(임원의 임기)

①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1. 원장 : 3년, 연임할 수 있다.
2. 이사 · 감사 : 3년, 연임할 수 있다.
3. 선거직 임원의 결원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직책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4 조(임원의 결원) 연도중 선거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 개월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.

제 15 조(임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원장은 연구원의 최고책임자로서 연구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책임지고 통괄한다.
2.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고 필요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업을 분담 추진한다.
3.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. 매 회계 연도의 정기감사는 3 월중에 실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재진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
4. 연구소장과 연구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위원을 통괄한다.
5.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해당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4 장 기 구

제 1 절 총 회

제 16 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7 조(총회의 종류) 연구원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 18 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원장이 소집한다.
 1.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3. 정회원 1/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③ 제 2항 제 3호에 규정한 총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제 2항에 규정한 임시총회 이외에 감사가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개최 10일전까지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정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총회의 의장)

- ① 총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제 1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.

제 20 조(총회의 의결)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·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21 조(의결권)

- ① 총회 정회원은 모두 1인 1표씩의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정회원은 연구원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2 조(총회의 의결사항)
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사업계획·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원장·이사·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연구원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
5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
6.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
7.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
8. 연구원의 해산 결정
9. 기타 연구원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

②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회부안건을 서면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 및 결산승인과 제 18 조 제 2 항 제 3 호 및 제 4 항에 의거 소집되는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 항에서 제외된다.

제 23 조(총회의 특별의결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 표결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연구원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
3. 선거직 임원의 해임

제 24 조(총회의결사항 통지) 원장은 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정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5 조(총회의 의사록) 원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의사록으로 작성,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이 사 회

제 26 조(이사회의 구성)
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원장
2. 이사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.

제 27 조(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)
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될 때 원장이 소집한다.

1.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병기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제 1 항 제 2 호의 요청이 있을 때 원장은 이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제 28 조(이사회의 의결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때는 출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

얻어야 한다.

- ③ 임무를 태만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의결은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9 조(이사회 기능)

①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심의
2. 정관 및 각종 규정의 개정
3.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처리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처리
5.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처리
6. 고문·자문위원·명예회원 위촉에 관한 동의
7. 부설기구 설치에 관한 동의
8.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긴급시 총회의 기능 대행
9. 연구원의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
10. 임명직 임원의 임면에 관한 동의
11.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연구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

② 원장은 제 1 항 제 4 호의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정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30 조(이사회 의사록) 원장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3 절 연구소와 연구센터

제 31 조(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설치 및 구성)

- ①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보험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기 위하여 연구소와 연구센터를 둔다.
- ②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보험정책에 관한 연구조사
2. 보험경영에 관한 연구조사
3. 기타 보험에 관한 연구조사

- ③ 연구소 및 연구센터는 각각 소장 1 인과 센터장 1 인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2 조(소장 및 센터장의 임명·위촉 및 교체)

- ① 원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소장, 센터장, 연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② 소장, 센터장, 연구위원의 교체는 원장의 임기 중 그 구성원수의 2 분의 1 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 계

제 33 조(재산 및 경비)

- ① 연구원의 재산은 회비·찬조금·보조금 및 기타제수입금 으로 한다.
- ② 연구원의 경비는 제 1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③ 회비의 액수와 그 납기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4 조(회계연도)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매년 4 월 1 일부터 다음해 3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35 조(결 산)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제 38 조 제 6 항에서 정한 정기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6 조(재산의 관리) 연구원의 재산은 원장의 책임아래 총무담당이사가 관리한다.

제 37 조(회비 및 재정취급) 연구원의 회비 및 재정취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
제 6 장 관 리

제 38 조(협조)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정회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협조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39 조(정관등의 비치) 원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, 등기에 관한 서류, 총회·이사회 의사록을 상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만 한다.

제 40 조(감사서류의 제출)

① 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후 15 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보고서
2. 재무보고서

② 제 1 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당해 정기총회 개최 15 일 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제 2 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 1 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1 조(주무관청에 대한 보고) 원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대하여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2 조(사무국)

① 연구원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원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.

④ 사무국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처리하며 직원을 지휘·감독 한다.

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7 장 해 산

제 43 조(해 산) 연구원의 해산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

또는 이 연구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 44 조(청산인) 연구원을 청산할 때에는 회원중에서 5 인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
제 45 조(청산인의 임무) 청산인은 지체없이 연구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·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6 조(재산의 처리) 본 연구원 해산시 잔여재산이나 부채의 처리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47 조 (제규정의 제정 및 적용)

-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세칙 및 내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.

제 48 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9 장 부 칙

제 49 조(시행)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